

2018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8년 6월 19일(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0명 중 7명 참석)

4. 안건

□ 심의

-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보고

- 1)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2) 납입금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3) 실용영어 및 학점인정 영어 특별시험 시행 내규 폐지(안)
- 4) R·O·T·C 군사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 5)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추천에 관한 내규 폐지(안)
- 6)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7)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 8)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 9)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 개정(안)

5. 회의 내용 및 결과

- 성원 확인 후(총 10명 중 7명 참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장의 요청으로 직원인사 규정은 총무처장이,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 개정(안) 안건은 대외교류팀장이, 이외 안건을 교육지원팀장이 설명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원들이 동의하였다.

● 심의 안건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학칙 내 관련 조항 규정 명칭 수정
- 재학연한 폐지에 따라 재학연한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유급된 학기에 대한 연한 포함기준 수정
- 입학연도별/단과대학(학과)별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동북아대학 국제학부 및 정책법학대학 국제학부 이수학점표 수정
- 국제학부 전공이수학점 변경내용 명시 : 2013학번 신입생(66학점) / 2014학번-2015학번 신입생(54학점) / 2016학번 신입생(45학점)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납입금 반환에 관한 조항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항에 의거하여, 본교 납입금 반환에 관한 조항문구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적용 및 수정
- 변경내용 : 등록금의 반환기준, 학기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반환

□ 의결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다.

● 보고 안건

1)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총무처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제10조의 2(기관파견 및 겸임근무)에 법인 파견 및 겸임 근무 범위 및 보수

지급 조건 추가

- 기획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었듯이 다시 시행하는 것에 각각의 조건들이 또 다른 문제를 양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법인직원을 채용하면 되며, 겸임 근무 등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임을 표하다.
- 광운원격평생교육원장도 겸임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급여 및 사대보험을 나눌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다.
- 심의 안건과 보고 안건의 분류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전에는 대부분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여 불필요하게 시간을 들여 의결을 하였던 점이 있어서 상당 부분을 보고 안건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으나 과도하게 보고 안건으로 분류된 상황이 되었음을 설명하다. 과도하게 보고 안건으로 분류된 것을 다음 평의원회 구성 때 잘 논의하여 분류기준을 차기 대학평의원회에 인수인계하도록 계획해야 할 것임에 대해 의사를 표하다.
- 본 안건이 심의 안건일 경우에는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다.
- 총무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할 때 우려되는 남용에 대한 방지대책, 혹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다.
- 타대학 사례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삭제되었던 내용임에도 다시 내용을 추가하는 학교의 입장도 있어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학교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다.
- 법인의 관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안건이지만, 본교의 관점에서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하다.
-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겸임, 겸직을 금지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의견이며 법인 직원이 법인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겸임, 겸직에 대해 교육부에 구두로 문의하고, 공문으로도 답변을 받았으며, 이는 적극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 대학의 상황과 형편상 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개념인 것이지 적극적인 의미로써의 겸임이나 겸직을 활성화하자, 또는 장려하자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다.
- 본 규정 개정(안)의 뒷부분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자의성을 의미하는 것이나 현재는 구체적인 업무의 양이나 맡은 업무 분장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에 따른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고,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고 지급을 할지에 대해 협의가 아닌 구체적인 명시된 조건들을 통해 시행하여야 자의성을 확보하고 학교가 또는 법인이 임의로 개개인의 급여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급되는 등의 불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다.
-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급여, 사대보험 등의 지급 방법은 규정에 포함하기에는 포괄적이어서 별도로 시행지침으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음을 설명하다.

- 시행지침으로 명시화 하고 진행하는 것에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하였고, 규정 또는 지침으로 명시화해서 구분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다.
- 본 안건에 대한 문제점은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중요한 사안이고 규정이 개정이 된 후에는 더 많은 파견 혹은 겸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고, 더 많은 파견 혹은 겸임 근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 우려를 표하다.
- 본 안건을 심의 안건으로의 변경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기존의 시행이 있기에 특정한 안건에 대해 회의 때 변경하는 것은 이후의 회의에서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고 안건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총장 보고 시에도 의견을 기록해 놓고 시행했음을 설명하다.
- 기획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까지 안건이 상정되어 왔는데, 대학평의원회에서 보고 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기획관리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으로 정리가 되었고, 시행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조건부로 하여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설명하다.
- 안건의 성격상 충분히 중요한 안건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행지침을 명확히 해서 시행하기로 의결한 내용이므로 반대 의견을 상세하게 명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행하면서 더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다.
- 개정(안)에 불가피성에 대해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인사권자가 제청 없이 바로 인사권을 행함으로써 소통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점을 지적하였고, 인사권 제청권한이 보장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본 인사 규정은 본교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본 개정 내용은 법인 정관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관상에서도 본 내용을 포함 필요성이 있으며 포함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제10조의 2에서 목적어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문구 포함 여부를 확인 후 수정 여부를 확정할 것임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 : 본건에 대하여 보고안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처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규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회의록에 남길 것을 주문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2) 납입금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반환사유 문구 수정
 - 납입금 반환금액 산정의 기준일 변경(전액 반환일 기준 : 당해학기 개시일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3) 실용영어 및 학점인정 영어 특별시험 시행 내규 폐지(안)

-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폐지사유 : 2014학년도 영어졸업인증제 폐지 및 '실용영어1,2' 과목 미운영에 따른 관련 내규 폐지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4) R·O·T·C 군사학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ROTC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3~4학년 재학중 학기당 3학점씩 군사학 교과목을 의무 이수해야하며. 대상 학생들은 '군사학' 교과목을 학기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하여 수강신청 함으로서 전공 및 관심 과목 수강에 군사학(3학점) 학점만큼의 신청 제한이 있음
 -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군사학 3학점을 수강신청 상한학점 제한에서 예외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학군단 평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실적을 충족하고자 함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5)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유학) 추천에 관한 내규 폐지(안)

- 교육지원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폐지사유 : 제도 미운영에 따른 관련 내규 폐지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6)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대외교류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대외교류팀 업무 중 기숙사(International House) 운영 및 관리 업무 삭제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7)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규정 개정(안)

- 대외교류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인터내셔널 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폐지에 따라 인터내셔널 하우스 운영

부분 삭제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8)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 대외교류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영어트랙은 영어를 모국어,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지원자 또는 광운대학 교에서 인정하는 영어 성적 소지자의 경우 필기고사를 면제

□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하면 입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수강을 할 때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2020학년도에 연계전공으로써 BMSE(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이란 연계전공을 신설할 예정이며, 모든 교과목을 영어로 진행 예정이기에 충분히 그 전공 속에서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교과목 기초설계를 한 상태이며 학생들이 충분히 수학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임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9) 발전기금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규정 개정(안)

□ 대외교류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다.

□ 주요 내용

- 내용 추가 : “기금이 기타금융상품(주식)인 경우, 현금화 가능한 기타금융 상품으로 제한하고, 기금조성 시점에서 현금화 추정금액의 2%이내에서 발전 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기금 유치 주관부서 변경(홍보팀 → 대외교류팀)

- 연간 1인 최대 포상액 상한선(3,000만원) 폐지

□ 인센티브 비율이 2%가 맞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일반 기부금은 5% 이내, 자정기부금은 2% 이내이며, 금융자산 등의 경우에는 2%까지는 신설할 때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활성화가 될 경우 확대 필요 시에는 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 : 보고내용에 동의하다.

○ 의장 :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물다.

○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